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

[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, 2009.5.13, 2008고단2364,2009고단155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이주희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이민석

【주문】

】 1. 피고인 김철규을 징역 8월, 피고인 위양심, 박한용, 변외성, 유명자, 강진서를 각 벌금 500,000원, 피고인 김미혜, 김정분, 서형태, 손승환, 양미경, 박경은를 각 벌금 200,000원에 각 처한다. 2. 피고인 위양심, 박한용, 변외성, 김미혜, 유명자, 김정분, 서형태, 강진서, 손승환, 양미경, 박경은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3.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9일을 피고인 김철규에 대한 위 형에, 3일씩을 피고인 위양심, 박한용에 대한 위 노역장유치기간에, 2일씩을 피고인 변외성, 김미혜, 유명자, 김정분, 서형태, 강진서, 손승환에 대한 위 노역장유치기간에, 1일씩을 피고인 양미경, 박경은에 대한 위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. 4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김철규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5. 피고인 위양심, 박한용, 변외성, 김미혜, 유명자, 김정분, 서형태, 강진서, 손승환, 양미경, 박경은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